

의안번호	제923호
의결 연월일	2025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유상용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5년 4월 11일

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유상용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2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5년 4월 11일
발 의 자: 유상용·이정범·김성대
김정일·박병천·박봉순
박진희 의원

1. 개정이유

- 충청북도 교육행정협회의의 충청북도청 당연직 위원 구성 변경을 통해 협의회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- 가.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문구 정비(안 제3조제1항)
나. 교육행정협회의 당연직 위원 구성 개정(안 제3조제2항)
 - 도청: ‘균형건설국장’ → ‘기획조정실장’으로 변경
다. 제6조 제목을 ‘공동의장의 직무’로 개정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붙임
나. 비용추계: 붙임
다. 관계부서 협의: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 정책기획과
충청북도청 과학인재국 미래인재육성과

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**협의회**”를 “**협의회** 공동의장은 교육감과 도지사가 되며, **협의회**”로, “**하며, 교육감과 도지사가 공동의장이 된다**”를 “**한다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**과학인재국장, 문화체육관광국장, 균형건설국장**”을 “**기획조정실장, 과학인재국장, 문화체육관광국장**”으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**의장의 직무**)”를 “(**공동의장의 직무**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3조(구성) ① <u>협의회</u> 는 공동의	장 2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	제3조(구성) ① <u>협의회</u> 공동의장	은 교육감과 도지사가 되며, <u>협</u>	<u>의회</u> -----
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	원의 경우에는 남녀 성비를 고		-----	-----
려하여 어느 한쪽 성(性)의 비	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		-----	-----
록 <u>하며, 교육감과 도지사가 공</u>	<u>동의장이 된다.</u>		-- <u>한다.</u>	
② <u>협의회</u> 의 위원은 다음 각 호	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감과	② -----	-----	-----
도지사가 협의하여 임명 또는	위촉한다.		-----	-----
1.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교육	청(이하 “교육청“이라 한다)의	1. -----	-----	-----
기획국장, 교육국장, 행정국장	으로 하고 충청북도(이하 ”도“		-----	-----
라 한다)의 <u>과학인재국장, 문</u>	<u>화체육관광국장, 균형건설국</u>		----- <u>기획조정실장, 과</u>	<u>학인재국장, 문화체육관광국</u>
<u>장</u> 으로 한다.			<u>장</u> -----.	
2. (생 략)		2. (현행과 같음)		
③ (생 략)		③ (현행과 같음)		
제6조(<u>의장의 직무</u>) ① · ② (생	략)	제6조(<u>공동의장의 직무</u>) ① · ②	(현행과 같음)	

관 계 법 령

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제41조(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) ①지방자치단체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·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.

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없 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

3. 미첨부 사유

「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·운영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

4. 작성자: 기획국 정책기획과장 모지영